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83 호 2023. 1. 19.(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7회[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8회[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79회[202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80회[2023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99회[도시관리계획(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입안 및 열람공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2회[공인 등록 공고].....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15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번호 (년월일)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내용
	성 명	주 소				
제2022-1호 (2022.08.2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 복구 당사동 산 200 앞 공유수면 위도(N) 35°34.543 경도(E) 129°28.052	999.8	2022.01.09.	인공어초 제작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8호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복구 울동 공공주택지구 (효문동 10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사업

나. 명 칭: 울산광역시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열공급설비)

2. 위 치: 효문동 1055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당초) 열공급설비 908㎡

(변경) 열공급설비 908㎡, 보행자우선도로 355㎡

가. 열공급설비 (변경없음)

시설	면적(㎡)	규모	비 고
열공급설비	9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수보일러: 0.8 Gcal/hr × 1대 - 온수저장탱크: 40㎡ × 1대 (STS 재질) - 판형열교환기: 440 Mcal/hr × 2대 (STS 재질) - 온수공급펌프: 입형인라인 펌프 × 7(3)대 (임펠러 SSC13. 축 STS 재질) - 수소연료전지: 440kW×3대 (두산퓨얼셀_PAFC Type) 	변경없음

나.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등 급				면적(m ²)	연 장(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로	3	보81	6	355	58.9	변경(추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가. (당초) 성 명: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대표 한삼건

(변경) 성 명: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대표 윤두환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5. 사업기간: 2022. 11. 24. ~ 2023. 7. 25. (변경없음)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사업 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 및 토지세목조서 현황

(단위 : m²)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결정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비 고
						성 명	주 소	
울동공공 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문동 1055번지 (열공급설비)	잡	908	908	908	울산 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광역시 남구 두왕로 (신정동) 318	변경 없음
울동공공 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효문동 1056번지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355	355	355	울산 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광역시 남구 두왕로 (신정동) 318	변경 (추가)
합계 (당초)			908	908	908			
합계 (변경)			1,263	1,263	1,26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79호

202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위탁의료기관마다 접종 가능한 백신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 필수

※ 위탁의료기관 백신 인터넷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 지정의료기관찾기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소	
1	구암의원	287-72 46	염포로 633	포구내
2	함께하는의원	289-70 46	염포로 673	
3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 00	염포로 529, 303호	양정
4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 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5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 87	화봉로 67, 4층	화
6	김유홍내과의원	288-96 93	화봉로 67, 2층	
7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 75	화봉로 75	
8	홍찬의소아청소년과의원	281-07 56	화산6길 8, (스타워) 3층	
9	울산시티병원	280-90 68	산업로 1007	포구내
10	김현경의원	287-03 14	화봉로 60, 206호	
11	현대연합의원	291-98 00	상방로 106, 2층	
12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 10	명촌15길 10, (평창리비에르3차상가) 201호	포구내
13	행복한내과의원	283-22 99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301동 206호	
14	이내과의원	289-10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66		
15	세나산부인과의원	285-38 00	호계로 281	호계동
16	하나산부인과의원	282-82 58	호계로 292	
17	울산엘리아병원	290-21 00	호계로 285	
18	이순일내과의원	282-75 88	호계2길 7, 3층	
19	탐이비인후과의원	249-75 82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503~504호	송정동
20	몸바른의원	222-75 75	박상진13로 3, 3층	
21	송정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		박상진13로 3, 4층 401호	
22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 36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4층 403~405호	
23	복음요양병원	268-70 00	제내1길 6	시천동
24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 75	호계로 322	
25	한빛이비인후과의원	286-76 13	제내1길 2, 필그린상가 307호	
26	울산아동병원	282-71 71	호계로 332-1	
27	다정의원	282-01 27	매곡1로 15, 2층	매곡동
28	드림아이의원	295-01 29	호계매곡1로 31, (에일린의뜰1차상가동) 105호	
29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 11	매곡1로 15, 2층	
30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 31	매곡로 115, 202호	
31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977-10 00	매산로 15, (참조은빌딩) 3층	
32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1 70	괴정1길 114, 3, 4, 5층	
33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1 79	매곡1로 46, (대우프라자) 208호	
34	김영근의원	282-37 70	이화5길 10	중산동
35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 75	화산중앙로 84, 2층	
36	코끼리이비인후과	294-82 75	아진로 76, (맑은샘빌딩) 201호	상산동
37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 04	달천로 9, 202호	천곡동
38	민사랑내과의원	292-11 11	아진로 102, (그린상가) 201호	
39	새현대의원	291-37	천곡길 169, 106동 201호	

		70		
40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 00	천곡남로 33, (삼성코아루상가) 203~204호	
41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 77	가재길 87, 3층	
42	강동오션키즈의원	258-10 04	산하중앙2로 150	산하동
43	한결의원	268-82 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어) 305~306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80호

2023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에 의거하여 정기예방접종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대 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2010.1.1. 이후 출생아)
- 내 용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무료접종 가능
-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일정

대상전염병(백신)	접종횟수	접종시기
결핵(BCG 피내용)	1	생후 1개월 이내
B형간염	3	생후 0, 1, 6개월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	생후 2, 4, 6, 15~18개월, 만 4~6세
소아마비(폴리오)	4	생후 2, 4, 6개월, 만 4~6세
DTaP-IPV 혼합백신	4	생후 2, 4, 6개월, 만 4~6세
DTaP-IPV/Hib 혼합백신	3	생후 2, 4, 6개월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4	생후 2, 4, 6개월, 12~15개월
소아 폐렴구균	4	생후 2, 4, 6개월, 12~15개월
로타바이러스	2	생후 2, 4개월
	3	생후 2, 4, 6개월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	생후 12~15개월, 만 4~6세
수두	1	생후 12~15개월
A형 간염	2	생후 12~36개월(2회)
일본뇌염(사백신)	5	생후 12~36개월(3회), 만 6세, 만 12세
일본뇌염(생백신)	2	생후 12~23개월, 24~35개월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HPV	2	만 12세 여아, 1차 접종 후 6개월 뒤
파상풍/디프테리아(Td) 또는 Tdap	1	만 11~12세
인플루엔자 *	1	생후 6개월 ~ 만 12세 (첫 접종시기 따라 횟수 다름)

*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앱 : 위탁의료기관 및 접종내역 확인 가능

* 인플루엔자는 계절 접종으로 매년 9~10월 중 실시하며 세부사항(접종대상 및 시기)은 추후 공고 예정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문 의 : 복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52-241-8246~7)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99호

도시관리계획(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입안 및 열람공고

우리 구 어물동 일원의 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고시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31	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204번지 일원	58,407	-	58,407	'03. 12. 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58,407	-	58,407	100.0	'05. 3. 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49,330	-	49,330	84.5	-
자연녹지지역	9,077	-	9,077	15.5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8	6	국지 도로	222	어물동 213-23	어물동 195-8	일반 도로	구암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85	주차장	북구 어물동 1335-1번지 일원	1,380	감) 1,380	-	'05. 3. 24. 울고106호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5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폐지 - A=1,380 → 0m²(감 1,38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물항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나) 공간시설(변경)

(1)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8,883	감) 3,683	5,200		
폐지	211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31-1번지 일원	1,593	감) 1,593	-	'05. 3. 24. 울고106호	'22. 10. 13. 울(북)고235호
기정	212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20-2번지 일원	1,610	-	1,610	'05. 3. 24. 울고106호	-
폐지	213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35-2번지 일원	1,190	감) 1,190	-	'05. 3. 24. 울고106호	-
폐지	214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41-2번지일원	900	감) 900	-	'05. 3. 24. 울고106호	-
기정	215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93번지 일원	220	-	220	'05. 3. 24. 울고106호	-
기정	216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206번지 일원	490	-	490	'05. 3. 24. 울고106호	-
기정	217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50-8번지 일원	2,140	-	2,140	'05. 3. 24. 울고106호	-
기정	218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43-2번지 일원	740	-	740	'05. 3. 24. 울고106호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1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폐지 - A=1,593 → 0㎡(감 1,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물항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213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폐지 - A=1,190㎡ → 0㎡(감 1,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물항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214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폐지 - A=900㎡ → 0㎡(감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물항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열람기간: 2023. 1. 19. ~ 2023. 2. 2.(공고 익일로부터 14일 간)

3.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92)

4.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02호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의회 공인 조례」 제11조에 따라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의 회 의 장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복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운영	2023. 1. 19. (2023. 1. 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남녀직원 통합당직 시행(2023. 3. 1.) 계획에 따라 자녀양육을 위한 당직근무 제외자를 추가 규정하고
- 당직근무 편성인원 조정 및 재택당직제도 운영 규정 구체화 등 기타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 편성인원 조정(안 제6조제2항)

- 보건소 2명 → 1명
- 구립도서관 시설별 1명

나. 재택당직근무제도 운영 규정 구체화(안 제6조제3항)

다. 당직근무 제외자 추가 규정(안 제6조제4항)

- (현행) 임신 중 및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자공무원
- (개정)

- 임신부 및 거동불편 공무원

-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 만 8세 미만 자녀 양육 부부공무원 중 1명(숙직에 한함)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행정기구 변경,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등 현행화
(안 제7조,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5호)

- 담당관·과장 → 과장, 담당관·과 → 과
- 예비군 소대관련 규정 삭제
-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규정 삭제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5항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52)241-7203, 팩스번호 : 052)241-720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소·구립도서관·문화예술회관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제6조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부, 거동불편 등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3.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숙직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담당관·과”를 “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예비군소대장”를 “총무과장”으로 하고, “무기고 등 중요시설”을 “주요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호 중 “임산부”를 “임신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 직 근 무 자 편 성(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본 청		보건소	문화 예술회관	구립 도서관	동 행정 복지센터
	일 직	숙 직				
계	4명	2명	1명	1명	시설별 1명	1명
당직사령	1명 (5급~6급)	1명 (6급~7급)	-	-		-
당직원	2명 (7급이하) 1명 (운전직)	1명 (7급이하)	1명	1명	시설별 1명	1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생략)</p> <p>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의 경우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여 1명 당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1명으로 할 수 있으며, 보건소·문화예술회관·동 행정복지센터의경우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수 있다.</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와</u> ----- ----- <u>구청장이 상황에 따라 증감</u> <u>할 수 있다.</u></p>
<p>1. 구분청</p> <p>가. 당직사령</p> <p>(1) <u>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u> <u>숙직 : 6급~7급 1명</u></p> <p>(2) <u>토요일, 공휴일 일직 : 5</u> <u>급~6급 1명</u></p> <p>나. 당직원 : 7급 이하 2명</p> <p>다. 운전원 : 1명(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에 한정함)</p>	<p><삭 제></p>
<p>2. 보건소</p> <p>가. 당직원 : 2명</p>	<p><삭 제></p>
<p>3. 문화예술회관</p> <p>가. 당직원 : 1명</p>	<p><삭 제></p>
<p>4. 동</p>	<p><삭 제></p>

가. 당직원 : 1명

<신 설>

③ 임신 중 및 3세미만 자녀를 둔 여자 공무원의 일직 근무편성은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③ 보건소·구립도서관·문화예술회관의 장 및 동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이 신청할 때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임신부, 거동불편 등 당직근무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 2.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 3.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숙직에 한정한다)
-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 ⑤ (생략)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이 발령하고 구분청의 경우 소속 담당관·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② (생략)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주관 담당관·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생략)

1. ~ 6. (생략)

②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

⑤ · ⑥ (현행 제4항·제5항과 같음)

제7조(당직명령·변경) ①

-----과
장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 ② (생략)

③

-----과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생략)

제15조(당직실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 4.(생략)

5.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6. ~ 10. (생략)

② (생략)

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생략)

<신 설>

-----.

1 .

----- 총무과장-----

2. 주요시설-----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당직실 비품) ①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

1. (현행과 같음)

2. 임신부

3. (현행과 같음)

[별표]

당 직 근 무 자 편 성(제6조제2항 관련)

구분	본 청		보건소	문화 예술회관	구립 도서관	동행 정복지센터
	일 직	숙 직				
계	4명	2명	1명	1명	시설별 1명	1명
당직 사령	1명 (5급~6급)	1명 (6급~7급)	-	-		-
당직원	2명 (7급이하) 1명 (운전직)	1명 (7급이하)	1명	1명	시설별 1명	1명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예비군법」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동원)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민방위기본법」

제26조(동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2.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